

## 【 국내금융 뉴스 】

**금감원 금융지주회사 내부통제 모범규준 마련**

- 금감원은 금융지주회사의 건전경영과 안정적 성장을 위해 7개 금융지주회사(우리, 신한, 하나, KB, SC, 산은, 한국투자지주)와 T/F를 구성하여 ‘금융지주회사의 그룹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함.
  - 작년 7월 금융지주회사법의 대폭적인 개정('10.2.1. 시행)을 계기로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그룹내 업무위탁과 임직원 겸직 활성화가 예상됨.
  - 아울러 금융지주회사그룹은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자회사의 업종별로 리스크가 다양해 그룹내 리스크 전이·집중 가능성 등에 따른 그룹차원의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함.
  - 이에 개정 금융지주회사법도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그룹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하고자 함.
  
- 모범규준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회사 등의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가 업무 효율성이나 직무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해야 하며,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임직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지주회사와 자회사 등에 지휘 및 보고체계를 구축함.
  - 또한 그룹 준법감시인은 대표이사 추천과 이사회 결의로 선임되며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경영협의회 등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할 수 있음.
  - 특히 자회사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법규 준수 여부 점검과 위반 사실을 그룹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받은 내용을 감사위원회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자회사의 미비점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아울러 그룹내 임직원 겸직과 업무 위탁 때 고객과 이해상충이 있는지 등에 대해 사전평가를 하며 영업점·전산시스템을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공동으로 사용할 때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장치나 대책을 마련해야 함.
  
- 금감원은 금융지주회사의 내부통제 모범규준 마련을 통해 지주회사의 그룹 통할 기능을 강화, 그룹 준법감시업무의 효율성 제고, 내부통제체제의 일관성 확보, 금융지주회사의 건전성 유지, 금융소비자 보호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금융지주회사의 그룹 내부통제 모범규준 마련, 금융감독원 감독서비스총괄국, 2/10)